

수단 광물자원관련 법제연구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소)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수단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아프리카 5위의 산유국이자 남 수단이 분리 독립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최대 면적을 지닌 국가이다. 수단은 수십 년간 북부의 이슬람 아랍계 정부와 남부의 기독교 흑인들과의 내전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큰 국가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테러지원국 대상에 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남 수단이 분리 독립됨으로써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남 수단의 독립은 2005년 맺은 평화협정의 로드맵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9일 실시된 남 수단 분리 독립투표 결과 9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분리 독립이 결정되었고, 2011년 7월 9일 남 수단이 정식으로 분리 독립하였다. 이로써 남 수단은 유엔의 193번째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54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수단 정부의 또 다른 정치적 불안은 서부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아직도 반군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아직 불안정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단은 광활한 국토와 석유, 금, 우라늄 등 천연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현재는 석유의 경우 대부분 중국기업들에 의해 개발 및 판매가 되고 있고, 또한 중국은 수단 석유생산량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단 내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유량(68억 배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위)의 약 75-80%가 남 수단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단내 원유 생산량(일산 49만 배럴)의 85%가 남부 수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수단정부는 남 수단 독립이후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송유관은 모두 북부로 향하고 있고, 정유시설도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남 수단과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남 수단의 유일한 석유 수출통로인 북 수단으로의 파이프라인 통과세를 두고 남과 북 수단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 수단 국경에서는 부족간의 다툼으로 준(準)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석유와 관련한 이권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석유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진척되었으나 수단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광물부국들에 비해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미비 등이 광물자원 미개발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남 수단이 분리 독립하고 장기집권하고 있는 알 바시르 현대통령의 민주화 조치 및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 등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단의 잠재되어 있는 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단의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자원개발 관련 법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는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많은 길잡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자원개발을 위한 정확한 법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수단의 자원개발관련 법규들을 연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수단의 정치, 경제 현황들을 먼저 분석한다. 이는 수단의 정치리스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도 받고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수단의 정치현황 및 향후 전망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 또한 아직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석유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수단경제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체제로, 농업종사 인원이 전인구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비와 숙련노동력의 부족으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70년대 초에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정책 잔재가 남아 있고, 정부의 지나친 민간부문 통제정책 실시로 경제의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단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은행 구조조정 등 IMF의 권고에 따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단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단은 남 수단 독립이전 일일 약 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원유생산 증가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광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석유를 제외한 광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 석유, 제조업, 채광 및 채석이 각각 GDP의 20.3%, 6.3%, 0.6% 차지하고 있다.¹⁾ 2009년 석유의 생산 금액(생산가치)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채광 및 채석 분야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는 남 수단 독립이전, 수단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다른 광물 자원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나타났다. 특히 광물 자원 중에서 금, 고령토 등 일부 광물만 생산이 되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자원의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Red Sea Shore에 위치한 FODIKWAN 광산에는 56~60% 철함유량을 지닌 광석이 210만 톤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이 광산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단은 7월 9일 남 수단이 독립함으로써 기존의 석유생산량에 대한 분배로 수단 정부는 재정수입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수단정부는 광물자원에 대한 탐

1)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 Sudan, Oct. 2011.

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정부는 석유자원 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법규들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은 주요 광물 자원개발 법안들이다.

- 광산 및 채석 법령 (The mines And Quarries Act, 1972)
- 광산 및 채석 법규 (The Mines And Quarries Regulations, 1973)
- 투자 장려법; 2007년 개정판 (The 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03, Amended year 2007)
- 광물자원 및 광산 개발법령(Mineral Resources & Mining Development Act,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단정부(북 수단)를 중심으로 광물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또한 정치적 리스크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단 진출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II. 수단 정치, 경제현황 및 광업현황

1. 수단 정치현황

수단은 1956년 1월 1일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수단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1958년 11월 아브드(IBRAHIM ABBOD) 장군의 무혈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군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1965년 5월 총선거 실시 후 MAHGOUB가 집권하였지만, 당쟁과 남부 문제 등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회복치 못했다.

1969년 5월 니메이리(MUHAMMED NUMEIRI) 장군의 군사혁명이 성공하였고, 신정부는 수단사회주의를 선언하며 국호를 수단 민주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구정치인 및 반대파에 대한 대숙청을 단행하였고, 외국인 자산과 은행을 국유화하고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의 대공산권 의존도를 급속히 높였다.

니메이리는 1972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수단 사회주의연맹(SSU) 창립 및 일당제를 채택하여 일당독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5년 4월 6일 니메이리가 미국방문 중 소수 군사령관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여 니메이리 대통령이 축출되고 과도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86년 5월 마흐디(SADIG AL MAHDI) 민간연립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치적 혼란과 남부 수단과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989년 6월 30일 바시르(EL BASHIR) 준장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여 헌법정지, 국회 및 정당의 해산, 언론통제 등이 실시되었다.

알 바시르 대통령 집권 후 계속적인 사회통제, 경제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인기는 없으나 반정부세력의 약화, 남부반군의 내분 등으로 뚜렷한 도전세력이 없어 비교적 안정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혁명 후 대규모 숙청, 혁명배후 세력인 이슬람민족진선(NIF)이 군, 정부, 의회, 법원, 언론, 학계, 경제계 등 요직을 독점하여 여분형성을 주도하고,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세력을 계속 확대하였다.

한편 수단정부는 과격 이슬람화 정책 시행과 남부전쟁으로 인한 난

민발생 및 인권문제로 서방으로부터 원조중단 등 대외적 고립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2003년 4월에는 서부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반정부 세력이 북다르푸르 공항 등을 습격하자, 수단 정부는 민병대를 내세워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군 섬멸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잔자위드 민병대의 반인도주의적 행위와 정부군의 공세 등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였다.²⁾ 이 사태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수단정부를 비난하였고 알 바시르 대통령은 민간인 살해에 대한 명령 등의 죄목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다.

2005년 1월, 북부 정권과 남부 반정부 세력의 수단 인민 해방 운동(SPLM)과의 사이에 남북 포괄평화 합의(CPA)가 조인되었고, 22년간에 걸쳐 사망자 200만 명, 국내 난민 400만 명을 낳았던 남북내전이 종결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잠정 헌법이 성립되었고, 같은 달 북부 출신의 바시르가 대통령으로, 남부 출신의 수단인민해방운동 의장이 제1 부통령 겸 남부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잠정 통일 정부가 수립되었다.³⁾

남북 포괄평화 합의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중앙 및 지방 정부·의회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알 바시르가 연방정부의 대통령으로, 살바 키 이르가 남 수단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포괄평화 합의 이행의 최종 단계인 남부의 분리 독립투표가 2011년 1월 치러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어 7월 9일 공식 독립하였다. 이제 북 수단의 주요 문제는 아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르푸르 사태일 것이다.

2. 수단 경제현황

1) 수단 경제의 특징

수단의 경제구조는 극단적인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이다. 수단은 아프리카 5위의 산유국으로 석유가 정부 수입의 60%(남부의 경우 95%),

2) World Bank, 2003. "Sudan: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Document of the World Bank.

3) Alan Schwartz, 2009. "Scenarios for Sudan - Avoiding Political Violence Through 2011", *United State Institute Peace*. p.1

전체 수출의 95%, 외국인 투자의 70%를 차지해 국제유가가 경제성장과 외환 보유액을 좌우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⁴⁾

표 1. 연도별 수단 석유 매장 및 생산량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비중
	세계 대비									
확인매장량 (10억 bbl)	0.7	6.3	6.4	6.4	6.6	6.7	6.7	6.7	6.7	0.50%
생산량 (천 bbl/d)	241	265	301	305	331	468	480	475	295	0.60%

자료원 : BP

또한 수단의 산업구조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고용 인력의 80%가 농업에 종사해 농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에 있어서도 농업이 31%, 공업 34.7%, 서비스 34.2% 차지하고 있다.

수단은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4.4%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남수단 독립의 영향으로 석유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힘입어 하락폭이 완화되어 -0.2%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2년에는 산유량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어 경제성장률이 -0.4%로 하락할 전망이다.⁵⁾

표 2. 수단의 주요 경제지표

	2009	2010	2011f	2012f
경제성장률	4.0	4.4	-0.2	-0.4
소비자물가 상승률	11.2	13.0	15.8	12.5
재정수지/GDP	-2.6	-3.0	-3.9	-3.9
경상수지/GDP	-7.7	-5.8	-8.6	-11.5
수출액	85	114	77	33
수입액	85	88	84	64

자료: EIU

4) Central Bank of Sudan

5) IMF, 2011. "Africa Economic Outlook - Sudan", Oct. 2011

대부분의 생필품 및 공산품을 중국 및 아시아국가에서 수입하며, 산업건설 소요 기계장치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주요 제조업은 설탕, 음료, 시멘트, 피혁, 밀가루, 냉장고 등이나 규모가 작고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고질적 외환부족과 금융시스템 부재로 신용장 개설조차 쉽지 않고 언더밸류 및 밀수가 성행하는 낙후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제조업 미발달로 일부 식품을 제외한 여타 품목은 만성적인 물품부족현상을 겪는 공급자 마켓시장이며,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상품교역이나 송금 등에 제한이 많고 불안한 정정으로 위험이 상존한 시장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 기업에만 수출입 업무 권한을 부여한 관행이 남아 자금력이 풍부한 정부기업의 수출입 업무 비중이 높고 단일 기업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비 전문화된 시장이다. 대기업은 자동차, 기계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취급하며 중소형 기업은 대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틈새시장 위주의 제품을 취급하나 여전히 대기업의 영향력과 비중이 높은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3. 광업현황

1) 광업 동향

수단의 경제는 원유 등 1차 자원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에 투자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투자자본에 의해 회복세로 돌아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7월 9일 남 수단의 독립으로 원유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독립 이전에 일부 국경지역 유전 도시들에서 준 내전에 가까운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수단정부는 남 수단 독립이전에 합의를 통해 각각 50%씩 원유를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원유를 둘러싼 남 수단에서의 무력충돌 직후 남 수단의 원유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기존의 원유수입 감소를 수단의 풍부한 광물자원개발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수단정부는 광물자원의 기초조사 및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본격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섰다.

최근 몇 년간 원유생산 증가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광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석유를 제외한 광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 상반기 원유 수출액이 66억3천만 달러로 나타나 수단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하였다. 그 외 석유 제품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나타났다.⁶⁾

반면, 석유를 제외한 수단 광물생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의 경우 2008년 생산량이 2007년 대비 16% 감소하였다. 특히 금 생산량은 2004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는데, 2004년~2008년 금 생산량은 약 54% 감소한 반면, 동기간 원유 생산량은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⁷⁾

한편, 또 다른 광물 자원 중 하나인 고령토의 경우, 2007년 생산량은 2006년 대비 139%, 소금 생산량은 97%, 시멘트 생산량은 61%, 석고 생산량은 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단은 최근 정치가 안정권에 들어서자, 광물 탐사도 활발해 지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매장량이 예상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경 부근의 나일강 주변과 남서부지방에 탐사가 증가할 예정이다. 구리와 아연의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Ariab-Arbaat greenstone belt이다. Hadal Auatib 광상의 매장량은 4,000만톤 (금속량 기준, 구리 2.5%, 아연 3.7%, 금 0.6%, 은 10.6%)으로 보고된다.⁸⁾

이밖에 Advanced Mining Works사와 Elneelain Works 사는 연간 Ingessana Hills에 매장된 15,000톤의 크롬철광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품위가 51%인 단단한 괴광의 제련용 크롬철광 매장량은 약 200만톤이며 크롬과 철의 함유량 비율은 3:1이다.

또한 Qala en Nahl의 환석 마그네사이트 광장과 Dirbat Well의 규회

6) USGS, 2010. "2010 Minerals Yearbook - Sudan". p. 2.

7) Ibid.

8) Ibid. p. 2.

석, Jabel Gerein의 남정석 광상은 상업용의 미개발 산업 광물 광상이다. Qala en Nahl에는 품위 50%의 황석이 약 2500만톤 매장되어 있고, Dirbat Well에는 300,000톤의 규회석이, Jabel Gerein에는 450,000톤의 남정석이 매장되어 있다.

최근 수단정부의 광물자원개발에 맞춰 수단 지리 연구원(The Geological Research Authority of the Sudan)은 광물 투자가들을 모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수단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수단 정부는 2010년 12월, 자원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했다. 조치의 핵심 내용은 모든 형태의 탈세, 불법 통관, 밀, 설탕 등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불법 시장의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합법적 세금징수를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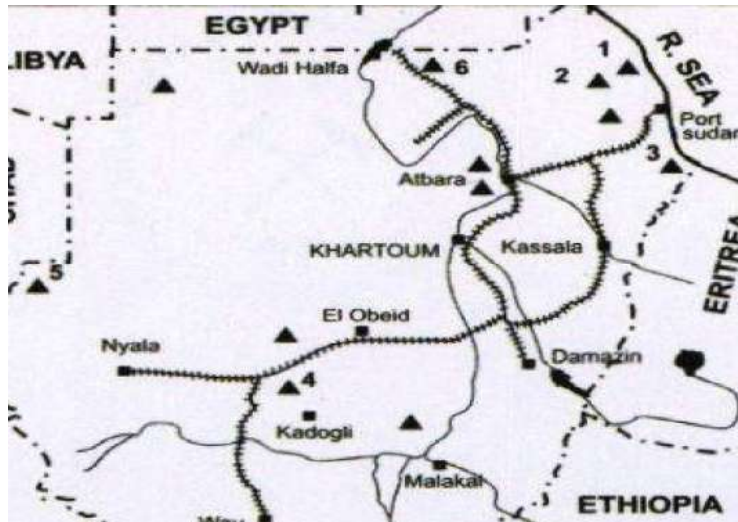
2) 주요 광물 광산

① 철광석

Red Sea Shore에 위치한 FODIKWAN 광산은 Marsa Oseif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다. 철을 주로 채광하는 이 광산은 수단 정부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56~60% 철금속량을 함유한 광석이 21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ODIKWAN MINE은 1960년대 초에 개광하여 유고슬라비아에 연간 120,000톤의 철광석을 수출하였다. 1967년에 Suez Canal의 폐업으로 인해 광산이 폐광되었다가 1986년 The Arab Iron & Steel사가 재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했고, 다시 1988년도에 Lusembourg Frim과 함께 재개를 시도 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⁹⁾

9) Republic of Ministry of Mineral, 2007. "Iron Ore in Sudan", Sudan GRAS, p. 2.

그림 1. 수단 주요 철광석 매장지



② 운모

Bayada 사막의 동부, Elsheraik 철도역 서쪽에 위치한 RAGABA 광산은 수단정부가 운영했었다. Ragaba 광산의 매장량은 2000톤 운모단편과 7톤의 운모판 등을 포함해 총 147,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40년부터 가행하였고, 1950~1970년대에 단편형태인 운모는 대부분이 이집트로 수출되었다. 현재는 광물 가격하락과 운송수단 경비의 상승, 광업 시설의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1984년에 폐광되었다.

③ 금광

Hassai 금 광산은 Ariab Mining Co.(AMC)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도 카르툼의 북동 5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90,000oz/년 생산하고 있다. AMC는 Cogema가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60%는 수단 정부 소유이다. AMC는 Red Sea Hill에 또 다른 금 광산인 Auatib Baderuk와 Adassedakh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Ariab광산이 현존하는 유일한 금광이지만, 수단은 오래전부터 소규모로 금을 생산을 해왔다.¹⁰⁾

또한 Cominor사는 이집트 국경 부근 북부지역을 탐사하고 있다.

10) USGS, 2008. "2008 Minerals Yearbook - Sudan". p. 2.

South african company Uni Group Holdings, Brinsley Enterprises Ltd, German-Jordanian consortium 합작회사, 국내 기업인 Rida Mining Co와 Advanced Mining Works, 영국의 African Gems는 greenstone belt와 금 탐사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¹¹⁾

④ 동 및 크롬

이밖에 BHP Billiton은 수단 중앙부의 Hofrat 및 Nahas 지구에서 탐광 계약에 서명하고 탐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동이 함유량 4%, 약 85,1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gessana Hill 크롬 광산은 국영 Sudanese Mining Co.가 10,000 t/년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은 약 100만 톤으로 소량의 망간과 운모를 지니고 있다.

표 3. 주요 광물 생산량

상품		2005	2006	2007	2008	2009
시멘트		331,200	202,200	326,200	370,000	1,000,000
크롬	톤	21,654	28,772	15,476	27,094	14,087
금	kg	3,625	3,158	2,703	2,276	1,922
석회석		9,000	7,000	7,974	12,705	30,000
고령토		NA	11,641	27,846	87,151	66,379
망간		NA	--	400	--	500
대리석	입방미터	18,000	12,000	6,000	1,600	--
운모		NA	NA	NA	66	100

자료원 : WBMS, World Metal Statistics 2010.

11) Heavens, Andrew, 2008, Morocco Managem to start gold exploration in Sudan: Thomson Reuters Corp., September 15, p.1.

표 4. 광산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광종	배장량	개발형태	단계	생산량	소유 기업
Ariab (Hassai)	금	2,537 천 톤	노천	생산 (1991년4분기)	71,700온스 (10년 예상)	La Mancha Resources Inc.(캐나다, 40%) Sudanese Mining Corp(SMC)(56%)
Gebeit	금	-	갱내	개발, 유지보수	-	Sudanese Mining Corp.
Hofrat En Nahas	동, 금	-	노천	개발(자금문제 로 중단)	-	수단 정부 소유(100%)
Shulai	금	-		목표 설정, 삼정 중단	-	수단 정부 소유, 운영(100%)
Aberketeib Tailings	금	-	갱내	생산	-	Bashken Mining Co Ltd(100%)
Nuba mountains	금, 아연, 은, 동			탐사		La Mancha Resources Inc(70%)

※ 자료원 : www.metalseconomics.com ※ 자료갱신 : 2010년 12월.

⑤ 석유

남 수단 분리 독립 후 수단정부는 원유수입 감소로 정부재정 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알 바시르 대통령은 북부 지역 석유 탐사 강화를 지시하였다.

알 바시르 대통령은 Ali Ahmad Osman 석유부 장관에게 북부 수단 지역의 석유 탐사 강화 및 신규 투자 유치 확대를 지시했다. 수단 정부는 7월 남 수단이 북부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남부 지역의 원유 생산을 통한 수십억 달러의 수입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바시르 대통령은 기술 및 자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제도 적용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Osman 석유부 장관은 북부 수단의 9, 11, 14 광구 및 차드와 접경지역인 12(A) 분지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단 정부는 북부 지역의 석유 생산량이 3~5년 내 일일 20만 배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최근 금광개발 동향

수단 광산부 장관은 2011년 금·구리 등의 광물 수출을 통해 40억 달러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 수단 독립으로 발생한

35%의 예산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부 장관에 따르면 수단에는 약 20만 명 이상의 소규모 불법 금 채굴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개발권도 없이 지난 1월부터 60톤의 금을 생산해 이집트 국경 지역으로 불법 수출했다. 그러나 수단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금광 개발회사들의 2011년 금 생산량은 10~12톤에 겨우 이르고 있다. 광산부 장관은 불·합법 생산을 모두 합하면 수단의 금 수입은 약 30억 달러, 이외 기타 광물 수출을 통한 수입이 10억 달러 정도로 계산하여 모두 40억 달러의 광물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¹²⁾ 그는 “만약 금이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40억 달러의 수입이 가능했을 것이며 석유 손실을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수단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금의 불법 수출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광산부의 조치 가운데는 불법 금 채굴업자들에게 생산된 금을 수단중앙은행에 판매토록 하고 금 가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금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르툼 북부에 위치한 금 가공 공장은 2012년 1월 가동이 시작될 예정으로 초기 연간 50톤의 금 생산을 목표 하고 있다.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 가공 산업에도 외국인 투자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광산부 장관에 따르면 국내·외 금광 개발 기업은 모두 합해 약 200개가 있으나 상당수의 회사들이 아직도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단 정부와 합작사인 Ariab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캐나다의 Le Mancha 그룹이(프랑스의 Areva 그룹의 계열사) 현재로서는 수단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고 있다. Ariab사는 20년 전부터 카툼 북동지역 25,000km² 면적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1년 금 생산량은 2.3톤을 겨우 기록했다(2003년 5톤)¹³⁾. Ariab사는 2012년부터 동 광산에서 구리 개발도 시작할 계획이다. 수단은 곧 ‘구리생산국협회’의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광산 개발을 통해 석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산부 장관의 말처럼 수단의 풍부한 천연 자원은 투자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 풍요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2) AFP/jeuneafrique.com 2011/10/10

13) Ibid.

4. 투자환경 및 투자법

1) 투자환경

수단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무부는 남 수단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 물자 및 자본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 중이다.

수단정부는 원유수출로 일정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형 플랜트나 건설공사를 맡주할 만한 재원이 없다. 이는 지속되고 있는 반군과의 군사대치로 인한 재원낭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전히 서부 수단에는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활동하기에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의 지급 또는 수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금융조달 방법이 없다. 수단에서 맡주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건설자 자본조달방식(BOT)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참가하는데 제약이 있다.¹⁴⁾

법률상 투자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사업등과 같이 공공성이 큰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국가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ttee)로부터 사업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유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촉진법을 통해 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가 전략적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 또는 비전략적 프로젝트(Non strategic Project)인가에 따라 상이하다.

* 우대사항

- 법인세 면제
- 투자 관련설비 및 원재료 수입시 관세 면제 및 할인(타이어, 연방, 연사, 건축 관련 자재)
- 투자 관련설비 및 원재료 수입시 관세 면제 및 할인(타이어, 연방, 연사, 건축 관련 자재는 제외)
- 소비세

14) FIAS, 2006. "Sudan, Review of administrative barriers to investment", pp.9-11.

- 각종 지방세
- 수출관련 세금
- 기타 특혜

* 우대 기간

- Strategic projects : 10년 이내
- Non Strategic Projects : 5년 이내

투자에 대한 보장

-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는 국유화 몰수, 압류, 자산 동결의 금지
- 법률에 따른 공유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소유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용 금지 및 수용시 시장가격에 의한 보상 투자시 표시 화폐로의 송금
- 해외 차입 및 투자금의 회수 및 과실송금
- 해외 차입의 필요시 수단 중앙은행이 취급 가능한 화폐로 관련 장관의 승인 하에 가능
- 투자금의 회수, 과실송금, Loan의 상환 등 외화송금의 경우 관련 서류(해외 차입에 대한 중앙은행 승인서, 해외차입 등록서류, 납세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가능
- 사업철수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 장비 및 투자금을 해외로 반출 가능

2) 투자법¹⁵⁾

수단은 1956년 수단독립직후 「특혜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단 내 투자를 위하여 공포된 최초의 법으로 무역, 산업, 식량공급, 지원부장관의 권한 하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산업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농촌경제부터 현대산업경제까지의 국가경제구조변화를 목적으로 하여 산업부문을 장려한 투자법의 시초였다. 당시에는 외국투자법을 통하여 별도로 투자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며, 다시 식민지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하였다.

15) <http://www.sudanjudiciary.org/>에 있는 투자보장법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들 임.

1966년 최초로 산업 및 광물부가 설립된 후 1967년에 「산업투자구성 및 장려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국내투자와 외국투자, 필요한 보장혜택이 제공되는 투자기회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수익, 대부이자, 외국자본의 송금혜택제공에 대하여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산업투자장려법 외에는, 투자 외 다른 활동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법령은 없었다. 따라서 산업투자장려법을 통하여 여러 건의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사업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1974년에는 「개발 및 산업투자 장려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공포 목적은 당시 국유화 및 몰수결정이 외국인투자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하여 국유화와 몰수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후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모두 수단내 투자활동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1980년 수단은 여러 분야의 투자에 관한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0년 투자장려법」을 공포하였다. 특히 투자 장려 법은 농업, 동물, 광물, 제조, 운송, 지축, 주택과 그 밖의 경제 분야의 투자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민간분야 또는 공공분야 또는 협력분야 또는 국내자본이 포함된 분야의 투자계획을 장려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였는데 이 규정은 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취득한 후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수단은 1990년 많은 정치, 경제 분야의 변화 속에 「1990년 투자장려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91년 3월 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투자자본이 내국자본 또는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또는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 또는 협력분야 또는 그 밖의 분야의 자본이라는 이유로 투자자본 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 법은 명백히 혜택 또는 편의 또는 보장제공에 있어 동일한 분야의 사업 간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1996년 「1996년 투자장려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재

정부산하의 공공투자보급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법은 1990년 법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포되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는 중앙집권제였다.

이후 1997년과 1999년, 2003년에도 투자법에 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7년 투자장려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수단의 투자장려법은 주로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단정부로서는 석유 이외의 투자수요가 적어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석유의 경우는 석유 자원법이 투자 등에 대한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어 투자장려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수단의 독립에 의해 석유산업이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투자장려법은 광물을 비롯하여 일반 제조업 및 농업부분 등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법이 되고 있다.

Ⅲ. 수단의 광물자원 법 분석

1. 광물자원 법

수단의 광물자원 법으로는 1959년에 제정된 광산·채석 법령(Mines and Quarries Ordinance, 1959)과 같은 해 제정된 동 규칙(Mines and Quarries Regulation, 1959)이 있다.

이 시기 광산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면허와 입대는 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고 이는 1972년 ‘광산 및 채석 법’(The mines And Quarries Act)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여 왔다. 이후 1973년에 광물자원법이 개정되었으며 이후 최근 광물자원 및 광산 개발법령(Mineral Resources & Mining Development Act, 2007)이 새로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광산 및 채석 법은 산하에 광산 및 채석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에너지 광산부 장관(Minister of Energy and Mining) 하에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들을 장관에게 권고안으로서 제출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에너지 광산부 차관이 의장이 되며 만약 차관의 부재시에는 수단지질연구청의 국장이 의장을 맡게 된다. 위원들로는 수단지질연구청 국장과 산업발전부 국장, 측량부의 국장, 국토부 국장, 기획부의 대표, 재정부의 대표, 경제무역부의 대표, 내무부의 대표, 법무부의 대표, 지방정부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광물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면허와 조광 등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위해 의견들을 제시한다.

면허발급에는 크게 일반 지질조사 면허와 독점 지질조사 면허가 있다. 일반 지질조사 면허는 비 배타적 권리로, 배타적 탐사 지역을 선정할 목적으로 행한 초기의 조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간이지만,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면적의 규정은 없다.

독점 지질조사 면허는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그리고 광물의 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을 얻기 위해 시추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독점 탐광을 행할 수 있다. 당초의 기간은 2년간이지만 이

또한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1 개의 광구는 2 km²이지만, 1 개의 광구에 10 구획이 인정되어 있다.

또한 광물자원 법에는 광업 조광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있다. 광업 조광은 모든 광물, 금속, 귀금석의 배타적 채굴권을 부여받지만, 다이아몬드, 방사성 광물, 희토류 원소 광물은 제외된다. 당초 기간은 21 년이다. 더욱이 21년의 연장이 인정된다. 조광 구획은 장방형의 형태로 규제되어, 200h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채석권은 석재의 채굴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간의 규정은 없지만, 42h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래에는 탐사와 조광과 관련 주요 법안들이다.

- 일반 탐사권, 독점지역 등록증명서, 조광권, 암염 및 석고 채굴권과 채석허가권의 출원 신청 시 이 시행규칙에 첨부된 별지1호의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출원신청에는 £S. 5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출원자가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수단 법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자가 조광권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일 경우, 수단 기업 관련법에 따라 등기 후 허가를 득할 수 있다.
- 광산 및 채석 법 1972년 개정에 따라 허가된 탐사권을 2개 이상 소지한 자가 1개 이상의 출원이 포함된 독점탐사지역의 전체 혹은 일부 구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기 소지자가 아닌)신규 출원자의 신청을 우선 승인한다.
- 위원회는 어느 때고 이유 제시 없이도 이 법규에서 명시하는 지역의 탐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탐사권자는 제한지역의 탐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독점탐사지역의 경우 통보일로부터 연간 임차비용을 비례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 조광권자가 탐사 혹은 조광구 조사 중 취득한 광물자원은 정부에 귀속된다. 조광권자는 정부가 처리하도록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문서 없이 처분 혹은 폐기하지 말아야하며 오직 실험과 분석의 목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 출원 수수료는 £S. 50파운드이고 갱신 수수료는 S. 25파운드이다.

- 독점탐사지역의 연간 입차료는 S. 15파운드/평방킬로미터이며 또는 그것의 일부이며 조광권 수수료에 더하여 납부해야한다.

2. 광물 조광을 위한 특별 조항 및 제재

광물 조광권은 오직 탐사권 소유자에게만 승인되나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별한 승인에 의해 탐사권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조광권을 공개입찰하거나 인가할 수 있다.

광구는 476페단(feddan¹⁶)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가 채광될 광물자원의 성분 및 조광권자의 경험과 기술능력을 충분히 심의하였다면 광구 경계 설정 확대를 인가할 수 있다. 또한 조광구는 직사각형으로 너비는 길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광구의 최소 조광료가 S. 20파운드이면 광구 연간입차료는 S. 2파운드이다.

로열티는 금속 또는 광물의 평균 국제 시장가의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단의 광물자원법안에는 여러 가지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광석 채굴, 채석법 하에 부여된 탐사권을 소지하지 않고 광물(채석물 제외)탐사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S. 500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법 하에 부여된 독점 탐사권 혹은 조광권을 소지하지 않고 해당광물을 채굴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채굴을 시도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S. 500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이 법 하에 부여된 채석허가권을 소지하지 않고 채석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S. 100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채석허가권 없이 채석을 하는 경우라도, 자연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채석허가권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다.

수단 정부는 불법 광물 채굴과 탐사를 막기 위해 이 법 하에 부여된

16) 페단(Feddan)은 이집트, 수단, 시리아 등에서 사용하는 면적의 단위. 1페단은 4200평방미터

허가권 또는 조광권 소지자가 명시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S. 100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기 권리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조항들과 상관없이 개인이 취득한 모든 광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며, 해당 광물 (자원)이나 그 광물 (자원)의 값어치(취급화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을 포함)도 정부가 동 법에 따라 회수한다.

3. 탐사권과 광산권 획득 절차

일반적으로 탐사 및 광산권역 특허 절차는 (출원)지원단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수단지질조사국(GRAS) 방문으로 시작한다. 이후 전문가에게 희망지역의 관련 정보 제공이 허가된다. 구두 및 서면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 또는 기업 요구에 맞는 광구 혹은 1개 광구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의 입시 선정이 이루어진다. 선정 절차는 전문가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을 답습함으로써 더욱 추진될 수 있다.

채택지의 현장 답사 후 광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긍정적일 경우, GRAS와 투자자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통장 2~3달 간 유효하며 만약 이해당사자간 향후 미래양허조약이 체결된다면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양해각서 만료 전, 투자자와 GRAS는 탐사, 개발에서 광산철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세부 협약을 마련하도록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협약서가 마련되면 정부를 대신하여 에너지광업 부장관(갑)과 투자자(을)는 각기 서명한다. 서명일로부터 투자자는 협약서에 설정된 기한, 계약조항 및 조건에 따라 선택한 광구 또는 지역에서의 활동이 허가된다.

협약서는 투자촉진법 2000년에 따라 투자자에게 특혜를 수여한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허가된 지역에서 기존 2~3년에 추가 2년을 더 탐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허가기간동안 탐사활동 중 광산기업과 이해당사자간에 경제성이 있는 광석 매장층을 발견한다면 수단공화국 기업법 1925년에 따라 법인

체를 설립해야 한다. 신규 법인체는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평방킬로미터 넓이의 토지 두 곳에 각각 조광권을 부여받게 된다.

투자자는 탐사와 개발활동 단계별로 채원의 조달능력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선택한 지역의 잠재성에 대하여 확신할 시에는 양해각서 없이 바로 최종 양해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광산 및 채석 법규(The Mines And Quarries Regulations, 1973)는 1972년에 제정된 광산 및 채석 법의 제 13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이다. 이 법규 제정으로 1959년에 제정된 광산 및 채석 법규 역시 폐지되었다. 이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은 1972년에 제정된 광산 및 채석 법과 동일하다.

① 광업 관계 기관

정부 기관

에너지 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ing)

주소 : PO Box 2649, Khartoum, Sudan

Tel : +249 11 77-3472, Fax : +249 11 77-7554

지질 조사청(Geological Research Authority of the Sudan) : 에너지 광업부의 산하에 있고, 지질 조사, 물리 탐사, 화학 탐사를 행하고 있다.

<http://www.gras-sd.com/>

② 광업 분야에 있어서 투자

수단은 지질학적인 구조에 있어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광물 자원의 부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의 목적은 광물, 석유, 지하수 등의 지하의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탐사하고,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원재료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화획득을 위해 금속류의 수출을 촉진한 것으로 균형이 잡혔던 방법에 의한 자원의 활용에 기여한 것입니다.

③ 광업 분야에 있어 이용 가능한 기초적 경제기반 (infrastructure)

Public Geological Research Authority는 다양한 축척의 지도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질학상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추가해 이러한 지도를 갱신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모든 광물 탐사를 맡는다. 여기에서는 그 밖에 모든 지질학적, 물리학적, 지구 조절 공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광물 자원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광물의 채굴 협정이나 채굴 계약을 체결한다. 당 기관은 생산을 촉진하든지 환경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정부의 권리를 지킨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정부의 법률에 따라 실행된다. 당 기관은 간부의 지질학자나 기사의 훈련과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이 조업 중인 기업과 공동으로 행하는 채굴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채굴 분야의 관련 연구를 실시하는 충분한 설비를 갖고 있는 연구소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양한 금속류의 광물 분석 결과, 그 광상의 위치, 실시한 조사에 근거한 당초 예측의 매장량과 타입(type)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의 보관도 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네트워크의 최신화를 하고 있고, 정보의 편집은 지리 정보 시스템(GIS)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IV. 결론

수단은 독립이후 북부의 아랍계 정부와 남부의 흑인계 반군들과 30년이 넘는 분쟁을 겪어왔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식민종주국이었던 영국이 수단의 이질적인 인종, 종교, 사회문화 등을 고려치 않고 독립을 허용함으로써 독립이후 수단의 내분을 가져오게 했다.

이로 인해 수단은 풍부한 원유 등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광물자원의 개발 기회를 찾지 못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철수한 원유의 경우, 중국과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개발이 이루어져 아프리카 5위의 산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로 다른 광물들에 대한 탐사 기술 부족과 자금부족으로 실질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단의 경제가 남 수단의 독립으로 인해 원유수입 대부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수단 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의 시급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수단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관한 구체적 평가를 발표하였다. 여당 National Congress Party(NCP) 주최로 열린 경제 포럼에서 바시르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후 석유가 풍부한 남 수단과의 분리 이후 겪게 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는 수입의 주원천인 석유 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세금 인상 없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원 확보 및 정부지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단은 남 수단 독립 이후 석유 수입의 75%를 상실하였다. 반면 남수단은 2005년 ‘포괄적 평화협정’ 이후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동력으로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단이 안보기관에 대한 과도지출로 석유 수입을 부실하게 관리하였으며 농업 및 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상실해 경제 다각화에 실패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¹⁷⁾

17) Sudantribune, 2011/10/19

지난 10월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수단의 실질 GDP가 2011년 -0.2%, 2012년 -0.4%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0년 6.5% 성장 및 2003년~2009년에 걸쳐 평균 6.7% 성장을 기록했던 것보다 상당히 하락한 수치다.¹⁸⁾ 수단 관료들은 남 수단이 수단항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때 이용하는 송유관 사용료에 대하여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단은 남 수단에게 배럴당 32달러를 요구하였으나 남 수단은 즉각 거절하였다. 양측은 타보 음베키(Thabo Mbeki)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되는 아프리카연합 매년 중재 하에 협상을 가졌다. 바시르 대통령은 수출 및 국내 생산을 강화하여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발생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1년 초 수단 정부는 수입제한을 실시하고 수단 시민에게 유통되는 화폐량을 축소하였다. 수단 중앙은행은 지난 수요일 수단 비석유제품 수출액이 2011년 1월~9월 15억 8천만 달러였으며, 2010년 1월~8월 12억 1천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1월~9월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출품 중 주 외화벌이 품목인 금은 올해 1월~9월에 걸쳐 9억 7,74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1월~8월 수치에 비해 33%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수단 정부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국가 재정 확충에 있어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최근 수단 정부가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50개의 광업권 발부권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다. 수단정부는 남 수단에게 빼앗긴 석유개발권에 따른 손실을 대신하기 위해 금 생산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아흐메드 (Abdelbagi Gailani Ahmed) 수단 광업부 장관은 새로 발부된 광업권에 따라 11개 주에서 광업이 가능해질 것이며 현재는 7개의 기업이 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업은 아직 탐사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북수단은 총 200개의 금광개발권을 발급해왔다. 2011년 수단의 금 생산량은 약 70톤으로 예상된다. 그 중 6~7톤만 정규 광산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골드러시 현상에 이끌려 금 채취에 나선 20만 명이 넘는 수단인에 의해 생산된 소규모 채굴에 의한 것으로 정확한 채굴량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¹⁹⁾

1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19) Foxbusiness, 2011/10/31

본 연구에서는 수단의 정치, 경제 및 광물자원 현황 그리고 광물 자원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수단의 광물자원 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특히 최근 수단정부가 외국인 투자법과 석유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남 수단이 독립하기 이전까지 아프리카 최대 면적을 보유한 수단에서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수단 광물자원개발 관련법규

o The Mines And Quarries Regulations, 1973

-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on him by Section 13 of the Mines and Quarries Act, 1972 the Minister of Energy and Mining hereby makes the following Regulations:

1. TITLE

These regulations may be cited as “the Mines and Quarries Regulations, 1973”.

2. REPEAL

The Mines and Quarries Regulations, 1959 are hereby repealed; but notwithstanding that all the rights granted or decisions made under those regulations shall remain in force and be deemed as if granted or made under these regulations.

3. DEFINITIONS

In these Regulation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words and expressions appearing herein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set out in section 3 of the Mines & Quarries Act 1972.

4. APPLICATIONS FOR LICENCES

4.1 Applications for general prospecting licences, exclusive areas registration certificates, mining leases, salt and gypsum leases and quarrying licences shall be made and contain the particulars

provided for in the forms set out in the First Schedule attached to these regulations.

4.2A fee of £S. 5 shall be payable by the applicant on each such application.

4.3 Where the applicant is a company or a partnership, evidence of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udan shall accompany the application.

4.4 Where the applicant is an alien, or a company incorporated Outside the Sudan, no mining lease shall be granted to the applicant until he forms and registers a company in the Sudan in accordance with the Sudanese Companies Law.

5. LICENCES AND LEASES FORMS:

Minerals Prospecting Licences, Mining leases, Salt and Gypsum lease, Exclusive Areas Registration Certificates and Quarrying Licences shall be granted on the prescribed forms shown in Sections I, II, III, IV, V of the Third Schedule attached to these Regulations.

6. DEMARCATION OF AREAS

Lease areas, quarrying licence areas and exclusive prospecting areas shall be demar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Second Schedule attached to these Regulations.

7. SPECIAL PROVISIONS AS TO PROSPECTING LICENCES

7.1 Where in any case, two or more holders of prospecting Licence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Mines and Quarries Act, 1972 apply for registration of an exclusive prospecting area thereunder, the whole or part of which is included in more than one of those applications, the Board shall, unless in its opinion there are adequate reasons to the contrary, prefer the applicant whose application was first received.

7.2 The Board may at any time, without giving reasons, exclude from a prospecting licence any part of the area comprised therein and the licensee shall, on receipt of notification of such exclusion, cease to prospect in the excluded area, but in the case of an exclusive prospecting area he shall be entitled, as from that date, to a proportionate reduction of the annual rent payable under the licence.

7.3 Any mineral obtained by a licensee in the course of prospecting under a prospecting licence or the course of proving an exclusive prospecting area thereunder, shall be the property of the Government. The licensee shall hold the mineral to the disposal of the Government and shall not remove it or dispose of i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Government, save only the amounts taken for the purpose of examination and analyses.

7.4 The fee for a licence shall be £S. 50 and £S. 25 for its renewal.

7.5 The annual rent in respect of an exclusive prospecting area shall be £S. 15 per square kilometre or any part thereof, and shall be payable in addition to the licence fee.

8. SPECIAL PROVISIONS AS TO MINING LEASES

8.1 A mining lease shall only be granted to a holder of a prospecting licence covering the area in question. Nevertheless, the Minister, on reasonable grounds, may invite tenders for mining leases or grant a mining lease, by a special agreement to a person not holding such prospecting licence.

8.2 The area of a mining lease shall not exceed 476 feddans, provided that the Board ma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of the mineral or minerals to be mined and the experience and competence of the applicant, authorize an increase of that area.

8.3 The lease area shall be rectangular in shape and its width shall not be less than one fifth of its length.

8.4 The annual rent shall be £S. 2 per feddan, provided that the minimum rent payable for any mining lease area shall be £S. 20.

8.5 The rate of royalty shall not exceed 7% of the value of the metals or minerals produced at the average world market price.

9. SPECIAL PROVISIONS AS TO QUARRYING LICENCES

9.1 The area of a quarrying licence shall not exceed 100 feddans and it shall be of square or rectangular shape and in the latter case its width shall not be less than one fifth of its length.

9.2 The annual rent shall be £S 8 per feddan or any part thereof provided that the minimum rent for any quarrying area shall not be less than £S. 20.

9.3 The annual rent for brick kilns shall be £S. 10 for any area not exceeding two feddans and five pounds for any additional feddans or any part thereof.

10.1 Any licensee for the production of cement shall pay annually on first day of July, a royalty at the rate of Pt. 1 per ton of clinker produced during the previous twelve months.

10.2 The government may, if it is proved that this royalty is less than any other royalty payable on each, cubic ametre of limestone, sand or gravel or clay, collect the higher rate.

11. POWERS OF THE DIRECTOR OF THE GEOLOGICAL RESEARCH

AUTHORITY OF SUDAN

11.1 The Director of GRAS shall have the power to verify all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 Board and to ensure their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and particulars required and to take any action he considers necessary before submitting such applications to the Board.

11.2 The Director of GRAS shall sig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ll licences and Leases approved by the Board.

11.3 The Board may delegate to the Director of GRAS its powers at any time as it sees fit.

11.4 The Director of GRAS or his authorised agents shall have

the power to inspect all mines and quarries for the purpose of following the progress of work and production, and to ensure the compliance with these Regulations or the Mines and Quarries Act, 1972 by license and lease holders.

o Procedures for the Acquisition of An Exploration and Mining rights in an Area)

- Normally, the procedure for acquisition of an exploration and mining concession area starts by a visit of an expert(s) representing the intending party to the Geological Research Authority of the Sudan (GRAS). Whereup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various areas of interest is made available to the expert(s). Such verbal and written information, may enable a preliminary selection of a block, or an area composed of more than one block, that suites the investor or company needs. The selection process could further be enhanced by permitting a short field visit to the area(s) if so required by the expert.

- Immediately after the field visit to the chosen area and where a positive opinion is formulated about any of the blocks by the exper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 may be signed between GRAS and the Investor. The MEMO is normally valid for a period of two to three month and deals with some major issues of importance if any future Concession Agreement i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hereto.

- It is recommended that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MEMO, the Investor and GRAS, start negotiating with each other, so as to frame and build a detailed working agreement that determin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all through

from exploration to exploitation and up to mine closure. When such an agreement is finalized, it is then going to be signe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Sudan, by the Minister of Energy & Mining (as the First Party) and the Investor (as the Second Party). From the signature date, the Investor will be granted the block or area selected under the terms, covenant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e Agreement.

- The Agreement grants the Investor the privileges contemplated in The Encouragement of Investment Act, 2000. It also gives the Investor the right to explore the Concession Area(s) for an Exploration Period of two to three years extendable for two more years.

- If on the bases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during the Exploration Period, an economically viable ore deposit was discovered, a Mining Company between the Parties, has to be incorporated in terms of the Companies Act, 1925 of the Republic of the Sudan. The Company will be granted Mining Lease(s), each of two square kilometres, as may be required for covering the whole area capable of Commercial Production.

- The Investor should provide enough guarantee for financing all phases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ctivities.

- If the Investor feels confident about the potentialities of the area he selects, negotiations for concluding a final Concession Agreement could start right from the beginning and, thus, no need for a MEMO in this case.